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심사보고서 작성·송부 절차의 명문화〉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78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8.
3. 회 부 일 : 2025. 12.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로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전에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의 전에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심사보고서의 근거 규정, 작성 및 송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등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규칙에 따른 절차 속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사보고서의 작성·송부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사실의 확정·위법성 판단·과징금 산정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는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그 송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⑩ (생략) <u><신설></u>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전 심사에 대한 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59조에 따른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u> <u>1. 사실의 인정</u> <u>2.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u> <u>3. 과징금의 산정 근거 및 가중 감경 요소</u> <u>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⑫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부하되,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u>
<u><신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외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송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u> <u>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u> <u>2.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u> <u>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u> <u>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 ----- ----- ----- -----

현행	개정안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제81조제13항 ----- -----.
1. <u>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u>	<삭 제>
2. <u>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u>	<삭 제>
3. <u>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u>	<삭 제>

□ 현행법 제81조¹⁾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과 조사의 절차 등

- 1)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122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④ 조사공무원은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조서

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제81조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의 청취, 감정,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등 조사의 방법을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는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규정함.

□ 한편, 현행법 제101조2)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의 및 운영과 사건의 조사·심사, 심의·결정·의결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을 두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25조에서는 심의절차의 개시와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 ⑦ 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의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⑨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⑩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 2) 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안은 규칙 제25조 중 제1항³⁾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11항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 즉, 심사관이 작성하는 심사보고서의 근거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심사보고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부하도록 하되, 심사보고서에서 신고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영업비밀 등은 송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임.

□ 실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⁴⁾의 심사보고서 제출 시점부터 심의절차가 개시되고,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사실관계 및 심사관의 의견이 심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3) 제25조(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① 위원회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였을 때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시장구조 및 실태
3.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4. 사실의 인정
5.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또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상황의 조사여부
7. 심사관의 조치의견(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문안을 포함)
8. 피심인 수락 여부(전원회의 소관사건은 제외)
9. 첨부자료
10.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대상

② 제1항제1호의 사건의 개요에는 사건의 단서, 피심인, 신고인, 신고 또는 인지내용 및 심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고인은 심사보고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을 피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2. 공정거래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4)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심사할 조사관리관 소속 공무원을 말함(규칙 제10조제1항).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피심인의 방어권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라 볼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사항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기술적·구체적 사항으로서 법률에 두기 보다는 현행처럼 고시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음.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현행 규칙 제2절 중 제25조의 일부 규정(제1항, 제2항, 제11항)만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인데, 의견청취 절차나 심의의 공개, 회의출석 및 의결서 작성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는 다른 절차에 비해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만 법률로 상향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음.

- 만약 개정안처럼 입법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우선, ‘심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도록 하는 개정안 제81조제14항은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는 현행법 101조와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 제81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송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81조제3항⁵⁾은 조사공무원의 진술 청취에 관한 것이고, 개정안이 의도하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송부 규정은 개정안 제81조제12항이므로 해당 인용조문은 수정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81조제12항에서는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송부에 관한 규정을 두는데, 심사관이 누구인지 현행법에서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적 정의도 필요할 것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109

5)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